

# 동물용의약품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안내

“조세특례제한법”의 특례규정인 “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(대통령령 제20630호, 08. 2. 22)”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축·수산농가에서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. 부가가치세 환급은 2008년 2월 22일 이후 공급받는 동물용의약품부터 적용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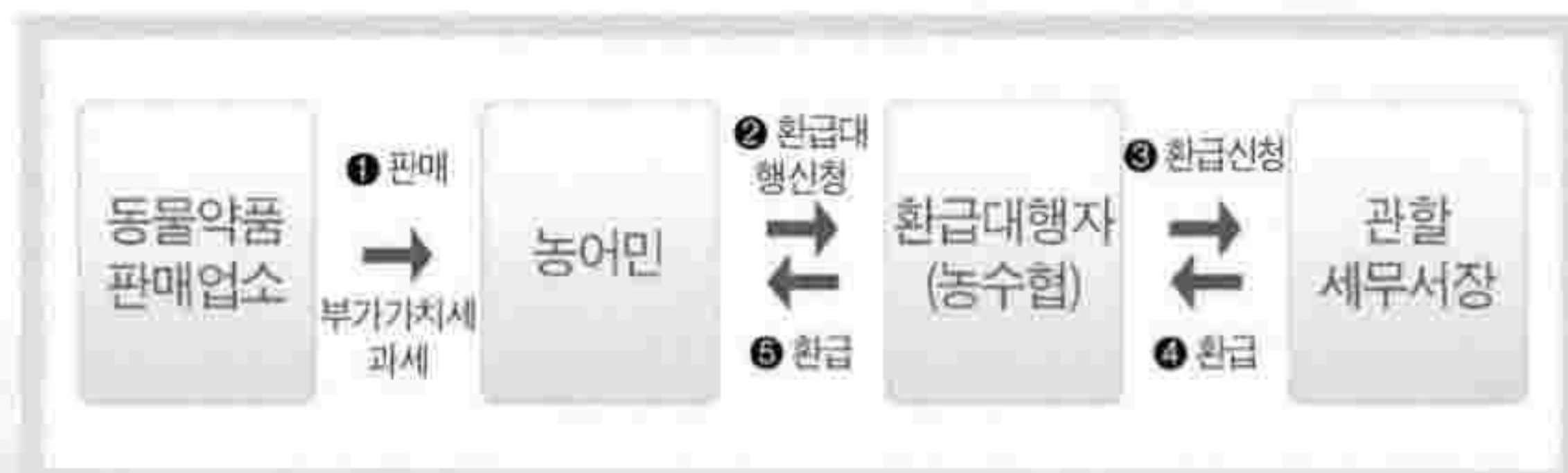
## ㉘ 동물용의약품 부가가치세 환급 주요 내용

### 1 관련 법령

- ‘조세특례제한법’ 제105조의 2
- ‘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’ 제6조~제13조, 별표 5, 별표 6
- ‘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’ 제5조, 제6조

### 2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

- 환급대행자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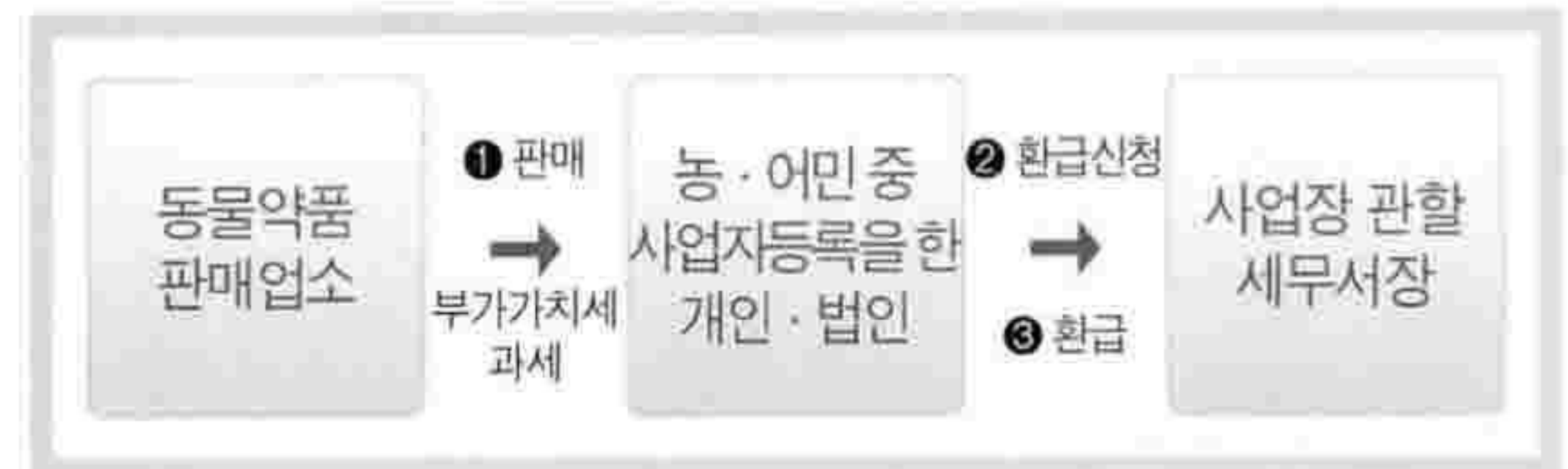


- ① 동물약품 판매업소는 동물약품의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분 표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
- ② 환급을 받고자하는 농·어민은 동물약품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급대행신청(세금계산서, 농·어민확인서 첨부)
- ③ 환급대행자는 환급대행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(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, 환급신청명세서 첨부)
- ④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대행자에게 환급

- ⑤ 환급대행자는 환급세액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농·어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, 이 경우 환급대행자는 소정의 환급대행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음

- 농·어민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

※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



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·어민에 해당하는 자증 「부가가치세법」·「소득세법」 또는 「법인세법」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

- ① 동물약품 판매업소는 동물약품의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분 표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
- ② 환급을 받고자하는 농·어민은 동물약품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 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(부가가치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,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 첨부)
- ③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

### 3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시점

- 2008년 2월 22일 이후 공급받는 동물용의약품부터 적용

